

송두율 교수 사건

1심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3고합1205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사기미수

피 고 인 송두율 (Song Du Yul, 국적 독일, 1944. 10. 12.생, 여권번호
[REDACTED]), 독일 뮌스터대 교수
주거 독일 베를린시 호르텐지엔가 10

검 사 정점식, 안영규, 김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김형태, 진선미, 이정희, 송호창, 윤영환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박연철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정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승현
변호사 안영도, 김진

판 결 선 고 2004.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2. 28.자, 1995. 8. 5.자, 1996. 3. 17.자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의 점, 1997. 7. 7.자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의 점 및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의 점, 1997. 9. 2.자, 1998. 1. 초순 미상일자, 1999. 1. 16.자, 1999. 6. 29.자, 2000. 4. 8.자, 2000. 12. 2.자, 2001. 5. 29.자, 2002. 6. 11.자, 2002. 12. 7.자, 2003. 3. 22.자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의 점 및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출생한 뒤 8·15 해방 후 귀국하여, 1957. 2. 광주 중앙초등학교를, 1960. 2. 광주 서중학교를, 1963. 2. 서울 중동고등학교를, 1967. 2.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각 졸업하고, 같은 해 7. 15. 독일로 유학하여 1972. 6.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1982. 1. 뮌스터대학에서 사회학 교수자격을 각 취득하고, 1993. 8. 18.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 1994. 8.부터 베를린시 소재 홈볼트대학에서 한국학 초빙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 3.부터 뮌스터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973. 9.경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1979. 10.

경 독일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최 명 미상 지도원의 안내로 다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서 약 1주일간 체류하면서 북한 외교부장 허담을 면담하고, 조선노동당의 지도 및 통제를 받는 사회과학원 부소장 성명 미상자 등으로부터 주체사상을 학습받은 후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 및 인삼주 등의 선물을 교부받고, 1982. 2. 경 윤이상, 김길순 등과 함께 '한국학술연구원(KOFO)'을 설립하여 위 사회과학원으로부터 수령한 주체사상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하여 관심 있는 유학생들의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연구이사의 직책으로 자문과 강연을 하는 등 친북활동을 전개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서울올림픽 개최 반대를 주장하기 위하여 독일인 3인과 공저(共著)로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 없는 나라, 남한(Kein Land für friedliche Spiele, Südkorea)"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독일 일원에 배포하고, 독일 일원을 돌아다니며 '88 올림픽 개최 반대 강연'을 하는 등 친북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88. 9. 위 북한대사관 소속 진 명 미상 지도원의 안내로 또다시 북한에 들어가 평양 근교에 있는 서재골 초대소에서 약 2주일간 체류하면서 주체사상 등 사상 교양학습을 받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 부위원장 전금철(실명 전금진)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 및 인삼주 등의 선물을 교부받은 자인바,

1.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1973. 8. 독일 뮌스터에 있는 뮌스터대학 앞 커피숍에서 유럽지역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이재원으로부터 입북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1973. 9. 이재원의 안내를 받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도착하여 성명미상 지도원과 함께 항공편으로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 평양 근교 명칭 미상 초대소에서 2주간 체류하면서, 주체

철학 및 김일성 혁명 역사 등 사상 교양학습을 받고,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연락부 소속 성명 미상 부부장으로부터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라는 제의를 받고, 입당원서 및 신상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동인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인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고,

○ 국내의 친북좌익세력들에게 '북한 바로알기'라는 명목으로 주체사상과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기고하여 대남통일전선전술 역량을 강화하기로 마음먹고 1988. 12. 국내 월간지 <사회와 사상>에 기고한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사회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글에서 "지금까지 북한연구는 반공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편견 아래 북한 실상을 왜곡시켜 왔다. 북한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시각에 따라 북한을 분석해야 하며, 북한 내부 시각을 알기 위해서는 주체사상 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통하여 북한을 평가 및 이해할 것을 제시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외 친북 세력들 사이에 '북한 바로알기'라는 미명 하에 주체사상 학습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도록 하고,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주체사상 확산과 북한체제의 유지·강화 및 그 동안 유럽에서의 친북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1. 5. 24. 평안도 묘향산에 있는 김일성 별장에서 북한 국가주석인 김일성을 단독 면담한 후 그 무렵 김일성의 지명에 의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고,

○ 주체사상과 북한체제를 선전하기 위하여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작성된 기고문이나 서적을 '국내에 들여보내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 1991. 6. 29.부터 1991. 7. 5.까지 3회에 걸쳐 <한겨례신문>에 "평양에서의

강의<상> · <중> · <하>"라는 제목으로 북한방문기를 기고하면서

· 리송갑 교수는 북의 '수령'을 흡사 '절대군주'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수령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 펼쳐야 펼 수 없는 '평등'과 '사랑'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사랑' 없는 '평등'은 사회를 자칫하면 혼란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하면서, 내가 어떤 글에서 '수령'을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이론을 들어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였다[1991. 6. 29. "평양에서의 강의<상>"].

· 나는 몇 번의 강연과 토론에서 북의 주체사상이 북의 내재적 요구에 의해 서 설명되고 전개되어 왔으나, 온갖 사상조류가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남한사회에서 이러한 사조들과 만나고 부딪혀서 그 생명력을 보여주었을 때만,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의 위상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991. 7. 2. "평양에서의 강의<중>"].

· 이번에 필자가 평양에 머무르면서 만난 많은 학자와의 토론에서 제일 많이 논의된 문제는 역시 북한의 사회주의와 사라진 동유럽 사회주의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었다. 반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전개된 '우리식 사회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통일된 사상적 무장 위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외부세계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릴 염려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내가 만난 북쪽 사람은 열이면 열 확신에 차서 주장했다[1991. 7. 5. "평양에서의 강의<하>"].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 1994. 5. 12.자 <한겨례21>에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

고하면서

· 반나치 투쟁의 대상인 나치도 독일 자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통성의 강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북이 내세우는 항일 빨치산 전통이나, '조국해방전쟁'의 투쟁대상이던 일제나 미제에 대한 북의 인민이 갖는 공통적인 응집력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의 정통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동독사람들이 그들의 상대적인 소비생활의 결손을 동체제 자체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서도 문제해결을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시도했다면, 북한사람들은 그들의 소비생활의 상대적 결핍은 미제의 압력과 봉쇄 그리고 군사적 긴장에 따른 군사적 대응 조처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북한 권력의 정통성을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실상을 호도하고,

- 1994. 7. 21.자 <한겨례21>에 "김주석 죽음 그 이후 북한은 곧 붕괴한다? - 영뚱한 정보에나 의존하는 서글픈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의지와 실천은 김 주석의 전 생애를 규정한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를 모든 문제의 핵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주체'의 철학체계를 현실화한다는 문제는 그러나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민족해방과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개편하려는 제3세계와 비동맹세력은 바로 이러한 김 주석이 추구했던 '시대적 공동체'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김 주석의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카터를 통한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있기 전에

· 김 주석이 가졌던 카리스마적 권위가 김정일 비서에게는 없기 때문에 권

력 내분이 일어나 북은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러한 발상은 그러나 지난 20년 이상 '후계자' 문제 해결을 준비해 온 북한에 있어서 모든 정책의 실질적 기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김정일 비서체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군은 당의 '혁명무력'이라는 정치적 통제 속에서 줄곧 성장했는데, 이는 분단 상황이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주기도 했지만, '주한미군'의 절대적 영향력 밑에 성장한 남한 군부와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정치력을 찬양하는 한편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 1995. 5. 10. '도서출판 당대'를 통하여 "역사는 끝났는가"라는 책자(증 제 26호)를 발간하면서

- 북한의 '주체사회주의'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내걸고 있는 이상은 자주성의 원칙 위에 선 조선의 설정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혼히들 이야기한다.
- 필자가 북을 방문하고 받은 확실한 인상 하나는 독일식의 흡수통합적인 통일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유혈적 사태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진보적 지성으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폐레스트로이카나 중국의 현대화문제는 진보적 지성의 표징인 양 격렬한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통일의 대상인 북한 사회주의 이념이나 현실에 대해서는 흡사 학문의 대상이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유치한 것' 또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 언급을 생략하거나 회피하기가 일쑤다. 후자의 입장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나, 전자의 입장은 학문적 태도 자체가 문제가 된다. …… 비판적 지성 가운데도 남한을 제3세계보다는 제1 세계에 가까운 사회로 인식하고, 심한 경우에는 인종적 편견까지 곁들여서 이러한 자

기획인 작업을 하기도 한다. ……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마지막 지성의 외로움과 동시에 비장한 각오를 필자는 북의 지성과의 대화에서 종종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동유럽 지성에게서는 볼 수 없었다.

· 50년대 중반부터 주체를 내세우고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일찍 벗어난 북한이 이야기하는 ‘주체사회주의’나 ‘우리식 사회주의’는 동독의 ‘동독색깔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구조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 피땀으로 건설한 사회주의에 대한 애착도 크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전달하는 결정론적인 의지를 단순히 수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로서 ‘독일통일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경험을 한반도에서 반복되리라고 믿기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동독색깔의 사회주의’와 비교해서 일찍부터 자주성을 강조했고,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에 비하여 사상적 요새점령 문제를 물질적 요새점령 문제 이상으로 사회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여기고 있다.

· 역사적인 인물이 ‘시대정신’의 산물이라는 말의 아면에는 역사적인 인물은 동시에 ‘시대적 공동체’의 정신을 만들어왔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 따라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의지와 실천은 김주석의 전생애를 규정한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전후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한 강대국에 대해서 자주성을 강조하고 자기 길을 걷겠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해 온 김주석을 강대국들은 싫어했지만,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위해 독립 이후에도 계속 투쟁해 온 제3세계와 비동맹세력은 김주석을 그들 세

계의 지도자로서 바라보았다.

· 사회주의 연구는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비판하여,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비판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 바로 이러한 계급모순, 민족모순의 동시적 해결과제가 북한 사회주의의 내재적 이념, 즉, '주체사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라는 북한 사회주의 이념을 전제하고 이 이념이 정치·문화·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어떠한 구체적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내재적 비판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 연구는 진행되어야 한다.

· 자주성의 실현이라는 문제는 철학은 물론 정치·경제 그리고 국제관계를 관통하는 북한의 중심축이며 이는 남한을 보는 관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남한을 자주화하는 것이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전제이며 담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은 우선 '남조선혁명'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 우선 주체사상의 내재적 검토는 남북통일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자주성·창조성 그리고 의식성을 인간의 본질로 파악하는 주체사상은 그 형성과정이 보여주듯이, 식민지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투쟁을 거쳐 국토분단이라는 상황 하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제기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 사회주의의 총노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상이 북한 이외의 세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요구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제3세계의 여러 곳에 주체사상 연구소나 주체사상 연구회는 물론, 남한에서도 주사파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주체사상이 요청하는 보편타당성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 진정으로 위대한 사상은 바로 시련기에 진가를 드러낸다. 주체사상이 현재 북한이 처한 여러 난관을 돌파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그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통일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는 물론 인간해방을 지향한 인류의 모든 사상적 노력의 좌표 위에도 정당한 평가에 따른 주체사상의 위상은 기록될 것이다.

· 김정일 체제는 현대 간부의 부정부패와 앞으로 심해질 수 있는 군부에 의한 지방분권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등소평 이후의 체제보다는 훨씬 안정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 김 주석의 사망은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바로 이 충격이 '수령·당·인민대중'의 단결을 강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 한국의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은 공업의 농업에 대한 '내적인 착취'는 농업의 공업에 대한 일방적 예속화 과정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은 자본과 노동간의 갈등에 국가가 물리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 (남한의 상황) 특히 노동과 자본의 철저한 이중구조적 '분할'을 통해서 숙련노동, 남성노동력, 대기업 등을 자본주의의 '기능적 핵'으로 삼고 이에 종속된 미숙련 노동, 여성노동력, 중소기업을 이러한 핵 기능에 철저히 종속시키고 계열화하는 현상은 학력과 성별, 임금격차는 물론 열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빈약한 국가의 지원정책에도

나타났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비록 동독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였지만 사회주의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자주성을 상실하였던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어 동독과는 다르며, 반동에 지나지 않는 남한의 지성들과는 달리 북한의 지성들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의지가 있으므로 독일식의 흡수통일은 우혈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주체사상을 먼저 이해할 것을 권유하면서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화함과 동시에 남한사회를 미국에 종속되었다고 비방하고,

- 1995. 8. 15. '한겨례신문사'를 통하여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자(중 제15호)를 발간하면서

· 북한의 민족정통성은 첫째, 북한의 정체성은 자기의 언어를 갖고자 하는 주변부의 긴장된 세계관의 표현이다. 둘째 반파쇼적 · 반식민지적 정통성은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북한에서 김 비서는 김 주석이 남긴 정치적 유산의 유일한 관리자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외에 어떤 사람도 김 주석의 정치적 유산을 결정적으로 해석할 위치에 있지 않다. 김 비서의 이러한 특수한 위치로 인해 김 주석의 유훈을 그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 유산의 관리자로서 아들의 위치는 전임자의 정책노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 서독을 앞선 근대화로, 동독을 뒤쳐진 근대화로 비교하는 공식이 한반도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에 비해 앞선 남한의 근대화가 결코 궁정

적으로만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김 주석에 대한 김정일의 절대적인 충성과 효심은 전체 인민의 귀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북한사회에서 김 주석은 유일무이한 인격으로서 지역이나 사회계층의 차 이를 넘어선 강한 공감대를 결집해 낼 수 있었다. 김 주석은 북한 사람들에게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이야기하는 '대지에 뿌리 내린 펠치산(tellurische Partisanen)'의 덕 목과 우리의 전통 속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할아버지가 풍기는 따스함을 결합시킨 인격으로 보이고 있다.
- 북한과 남한의 진보세력은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주제를 통해 그들의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한다. "우리는 인민이다"라는 분노의 폭발이 북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남한의 정치적 상황은 민중의 생존권 요구에 아직도 직면해 있다.
- 북한사회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정당성의 핵심인 주체사상은 제3세계 주변부라는 정체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긍정으로 인하여 생긴 일련의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국방 등의 영역에서 자주와 자립을 고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
- '남한모델'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민족적 자부심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민족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남한의 일방적인 대미종속에 있다. 북한이 보여준 중·소 분쟁시의 독자적인 외교정책과 최근의 핵 협상에서 보여준 그들의 자주적 외교전략에 적지 않은 남한사람들이 관

심을 가졌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남한은 대미종속에 의하여 민족정통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북한은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으로 반파쇼적·반식민지적 민족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김정일을 미화하고 김정일 체제의 강고함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 2000. 11. 9.자 <시사저널>에 “‘속도조절론’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면서

•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는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북·미간의 문제이다.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간의 협상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동시에 한국군 지휘권 문제와 결부되었기에 남한과 미국간의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 주한미군이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서 남북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수 있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납득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는 데에 연유한다.

• 대남 관계 인력이 부족해 이산가족 상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도 믿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한·미·일 공조체제’라는 단어가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통일보다는 평화, 통일교육보다는 민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말이 결국은 북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러한 불안정이 현재 남북관계를 지배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실체적 역할을 전면 부인하고, 남한의 통일정책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 2002. 10. 14. '한겨레신문사'를 통하여 "경계인의 사색"이라는 책자(총 제 27호)를 발간하면서

·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은 '선군영도' 또는 '선군혁명로선'이 사회주의 전취물을 보호하는 생명선이라고 여기고 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그 동안 현지 시찰을 가장 많이 한 분야가 군사분야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한 군사력 없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없다는 확신이 분명히 드러난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단결'은 가령 '신경제'의 신화를 배경으로 몰아친 남쪽의 개인중심 '벤처'열풍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동력'이다. 집단적 열정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북이 늘 강조해 온 원칙이지만, 새 세기를 맞은 북이 새로운 '관계체계'를 형성하는 데서도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러한 동력은 밖의 세계에게는 신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계몽만이 신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도 계몽의 역할을 한다는 변증법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서해교전 때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자 손실을 입은 북이 해안포의 발사준비를 끝내고도 끝내 발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평양에서 들은 적이 있다. …… 적어도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소극적인 평화마저도 정말로 아쉬운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북한이 남한과 달리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한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극단적인 김정일 군사독재체제인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생명선으로, 김정일을 북한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각 미화하는 등 위 내재적 접근법을 빙자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으로부터 매년 공작금 명목으로 미화 2~3만 달

러를 수수하여, 1987. 10. 폐쇄되었던 '한국학술연구원(KOFO)'을 재개설하여 그 운영자
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개인적 활동자금에 충당하고,

○ 1994. 7. 11.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소속 공작원인 송룡욱으로부터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석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가도 송선생은 장의위원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
는 지령을 전달받고, 같은 달 13일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국가장의위원회' 서열 23위에 등재된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자
격으로,

- 같은 달 14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평양에 있는 금수산 의사당에서 김정
일을 만나 조문하고,

- 같은 달 19일 위 금수산 의사당에서 개최된 김일성 장례식 행사에 참석하
고,

- 같은 달 20일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된 김일성 추도식 및 목란
관에서 개최된 '장례식 참석 해외동포들을 위한 위로연'에 참석하는 등,

1973. 9.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이후, 1991. 5. 일자 미상경 간부인 정치국 후보
위원으로 선임되어 1994. 7.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고, 수년간 공작금을 지급받았으며,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체제 찬양 및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저술활
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북
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인 노동당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2.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1991. 3. 중순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회과학원으로부터

“해외에서 학문과 조국통일 운동에 늘 분망하신 선생님을 우리 사회과학원이 초청하려 합니다. 우리는 선생과 만나 주체철학과 현대철학의 과제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갖기 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시기는 선생님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라도 좋겠지만 올해 5 월 중에 방문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수령함으로써 북한에서 개최되는 ‘주체철학 토론회’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1. 5. 10. 독일 베를린시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 5. 13. 인민경제대학을 방문하여 북한 교육부장관과 위 대학 총장 김국훈의 접견을 받고, 동 대학 교원 및 학자들과 학술좌담회를 개최하고,
- 5. 17. 위 사회과학원에서 북한 학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주체철학의 발전과 현대철학의 과제’ 제하의 학술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 주체철학 학자들로부터 주체철학 강의를 듣고,
- 5. 17.부터 5. 18.까지 위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의 안내로 평양에 있는 김 일성 생가인 만경대와 평양시내 등지를 관광하고, 애국열사릉을 방문하여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당 정치국 정위원인 허담(1991. 5. 11. 사망)의 묘 앞에서 묵상하고,
- 5. 20. 위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의 안내로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참관하고, 이어서 위 대학 소속 철학박사 및 사회과학 부문 학자들이 모인 ‘학술좌담회’에 참석하여 “남쪽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 5. 24. 성명 미상 지도원의 안내로 평안도 묘향산에 위치한 김일성 별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김일성과 약 3시간동안 단독으로 면담하면서, 그로부터

- 송 교수 같은 학자가 한 두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 우리 당원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앞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북한에 와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이어서 통일 이후의 독일 경제문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체제와 북한 체제의 차이점, 남북한 UN가입 및 주한미군 보유 핵철수 문제,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에 관하여 대화한 후 김일성과 기념촬영을 하고,

- 그 직후 일시 미상경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임동옥이 황장엽(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겸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에게

- 송 교수는 남한에서도 영향력이 크고 특히 독일에서 다년간 조직사업을 하다 보니 독일에 와 있는 남한 유학생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다.
- 위(김일성·김정일 지침)에서 송 교수를 크게 쓸 생각이고, 앞으로 송 교수의 이름을 '김철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 송 교수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통일전선부 산하에는 유능한 학자가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 전문가가 많은 그쪽 부서에서 주체사상 전문학자를 동원해서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 달라.

등의 부탁을 하여, 이에 위 황장엽의 지시를 받은 북한 주체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소장 이성갑, 주체사상연구소 실장 박승덕 및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장 김영춘 등으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을 받고,

- 5. 29. 평양에 있는 서재골 초대소에서 개최된 환송만찬에 참석하여 통일전선부 담당비서로부터 "송 선생의 학문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만찬사를 듣고 성명 미상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2,000달러를 받은 후, 5.

30. 평양순안비행장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나. 위 한국학술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던 김길순이 1987년 위 연구원을 폐쇄하자 북한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위 연구원을 재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통하여 입북 희망의사를 전달하여 사회과학원으로부터 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1. 7. 일자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약 1주일동안 체류하면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에게 한국학술연구원의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황장엽, 이성갑, 박승덕, 김영춘으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을 받고, 성명 미상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 상당을 받은 후,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다. 1992.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리지수 (전 주체과학원 원장)로부터 "전번 방문 때 선생이 요구한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철학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1992년 9월이나 10월 중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면 우리 전문가들과 토론할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수령함으로써 평양에서 개최되는 '주체철학 토론회'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2. 9. 일자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약 1주일동안 체류하면서,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을 만나 북한의 정치·경제 등에 관한 토론을 한 후 그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를 받은 후,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라. 북한으로부터 주체사상 토론회 등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3. 3. 19.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 체류하면서, 같은 해 3. 23.경 지난 1991. 5. 1. 입북시 피고인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바 있는 황장엽

및 이성갑, 박승덕 등 노동당 간부 및 북한 학자들과 회합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하여 좌담형식으로 학습을 받고, 1993. 3. 25. 장소 마상지에서 성명·미상의 부부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여 성명·미상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를 받은 후, 1993. 3. 26.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마. 1994.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제1부위원장 김철식으로부터 “겨례의 숙원인 통일을 위한 선생님의 여러 방면에 걸친 학술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의 저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해 조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고 기쁘게 접수하였고 이에 따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정으로 선생님의 조국 방문은 (1994년) 3월 중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수령함으로써 북한에서 개최되는 학술토론회에 참가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4. 3. 12.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 체류하면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에게 피고인이 구상중인 ‘독일과 한국 1945-1955’이라는 국제세미나에 북한측 대표가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김철식 등 노동당 간부 및 학자들을 만나 남·북한 및 독일 학자들의 언론 관련 세미나 개최문제를 협의한 후, 같은 해 3. 20.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바. 1994. 7. 11.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북한 이익대표부에 근무하는 공작원 송룡욱으로부터 “김일성 주석이 서거했으므로 빨리 조국에 가야 한다. 주석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가도 송 선생은 장의위원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라는 내용의 북한 ‘국가장의위원회’의 지시를 전달받음으로써 평양에서 개최되는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달 13일 모스크바를 통하여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 근교 초대소에서 체류하면

서, 같은 달 14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위 금수산 의사당에서 김정일을 만나 조문하고, 같은 달 19일 '국가장의위원회' 서열 23위에 등재된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자격으로 위 금수산 의사당에서 개최된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고, 같은 달 2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된 김일성 추도식에 참가하고, 같은 날 평양 목란관에서 개최된 '장례식에 참석한 해외동포들을 위한 위로연'에 참석한 후, 같은 달 23일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감으로써

각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3.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서 쳐벌을 받는다는 사실과 북한공산집단이 이른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며 노동당의 위대성 선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김일성·김정일의 생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북한정권 수립기념일 등에 해외교포 등으로부터 축전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나 국내의 좌익세력들에게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고 세습체제 유지의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해당 당시기에 계속하여 축전을 보내던 중

가. 1996. 12. 일자 미상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정일과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문구를 기재한 이른바 '설 명절 축하편지'를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통하여 김정일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위 편지가 북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나. 1997. 2. 일자 미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경애하는 장군님 탄생 55돐(1997. 2. 16.) 축하편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정일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위 편지가 북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다. 1997. 4. 일자 미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이른바 '위대한 수령님 탄생 85돐(1997. 4. 15.) 축하편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정일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위 편지가 북한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하고,

4. 피해자 황장엽이 1998. 6. "송두율 교수를 잘 알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 학생들과 독일에 있는 남한 유학생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를 '김철수'라는 가명 밑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하고 김일성이 접견한 사진을 신문에 크게 보도한 바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를 발간·배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노동당에 가입한 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있고,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김일성 사망 직후 구성된 국가장의위원회의 장의위원 중 서열 23위의 '김철수'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1998. 10. 13.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법원에 98가합86702호로 피해자 황장엽을 상대로 "원고 송두율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며 또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적도 없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황장엽이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여 원고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허위事實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1998. 7. 20.부터 위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을 속이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01. 8. 2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광동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오길남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창동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진표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장엽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영구, 박호성, 라이너 베르닝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03. 12. 26.자, 2004. 2. 27.자 각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5, 6, 12, 13, 14, 15, 16, 17, 19, 20회 각 피의 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길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홍진표, 황장엽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길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2000 7. 3.자, 2003. 9. 28.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장의위원 신원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김길순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조서(당사자 본인신문조서, 수사기록 18권 254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외교통상부장관 작성의 2000. 2. 24.자 사실조회회신사본(수사기록 18권 308면), 국가정보원장 작성의 2000. 11. 21.자 사실조회 요청사항 답변(수사기록 19권 733면, 변호인이 증 제22호증으로 제출한 것과 같다), 2001. 1. 31.자 사실조회 답변자료 통보(수사기록 19권 823면, 변호인이 증 제23호증으로 제출한 것과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방북신고서(수사기록 18권 41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속도조절론’ 유감”(2000. 11. 9. 시사저널),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족 없이 통일 없다”(2000. 9. 4. 한겨례 36면),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1994. 5. 12. 한겨례21), “북한은 곧 붕괴한다?”(1994. 7. 21. 한겨례21),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전망”(역사비평, 2001년 봄호),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유용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김정수”,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1998. 12. 사회와 사상), “전환기의 세계와 민족지성”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 없는 나라, 남한(Kein Land für friedliche Spiele, Südkorea)” 중 “희망 없는 농촌 - 농민들(Land ohne Hoffnung - Die Bauern)”(수사기록 3835~3841면, 이는 7719~7725면과 같다.), “경제 - 한강의 《기적》(Wirtschaft - Das 《Wunder》 am Han - Fluß)”(수사기록 3845~3854면, 이는 7729면~ 7738면과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송두율 교수의 북한인식" 출력물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김용순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각 출력물, 임동록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각 출력물, 전금진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각 출력물, 허담 관련 조선일보 인물검색면, 네이버, 한국일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경향신문 각 출력물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1996년도 독일 주재실 사업총화보고서"(TZR.BAK), "송두율과의 면담정형과 대책적 의견"(THD.BAK), "송두율부부를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DSF.BAK), "송두율을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POO.BAK), "김관기 동무에게"(RHKSRLDP.BAK), "독일 주재실 상반년 사업총화보고서"(TKD.BAK)(이상 중 제1호의 출력문서 일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1991. 5. 18.자, 1991. 5. 20.자, 1991. 5. 21.자 1991. 5. 25.자 1994. 7. 9.자, 1995. 2. 26.자, 1996. 9. 25.자 각 노동신문(증 제3 내지 6호, 증 제10 내지 12호), 1991. 6. 29.자, 1991. 7. 2.자, 1991. 7. 5.자 각 한겨레신문(증 제7 내지 9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1.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1권(증 제15호), "역사는 끝났는가" 1권(증 제26호), "경계인의 사색" 1권(증 제27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1. 3.5인치 디스켓 2개(증 제1호), 1991. 5. 2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호), 1994. 7. 1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장엽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03. 12. 26.자, 2004. 2. 27.자 각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5, 16, 1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길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홍진표, 황장엽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길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2000 7. 3.자, 2003. 9. 28.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김길순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초청장(수사기록 18권 414, 416, 417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방북신고서(수사기록 18권 41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1991. 5. 18.자, 1991. 5. 20.자, 1991. 5. 21.자 1991. 5. 25.자 1994. 7. 9.자 각 노동신문(증 제3 내지 6호, 증 제10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1. 1991. 5. 2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호), 1994. 7. 1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3의 사실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독일 주재실 상반년 사업총화보고서”(TKD.BAK)(증 제1호의 출력문서 ‘일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1996. 9. 25.자 노동신문(증 제12호)의 기재 및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영구, 박호성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창동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장엽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03. 12. 26.자, 2004. 2. 27.자 각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16, 17, 18 19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2000 7. 3.자, 2003. 9. 28.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장의위원 신원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조서(당사자 본인 신문조서, 수사기록 18권 254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외교통상부장관 작성의 2000. 2. 24.자 사실조회회신사본(수사기록 18권 308면), 국가 정보원장 작성의 2000. 11. 21.자 사실조회 요청사항 답변(수사기록 19권 733면, 변호

인이 증 제22호증으로 제출한 것과 같다), 2001. 1. 31.자 사실조회 답변자료 통보(수사기록 19권 823면, 변호인이 증 제23호증으로 제출한 것과 같다)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방북신고서(수사기록 18권 41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법원 98가합86702호 사건의 소장, 2001. 8. 23. 송두율의 황장엽 상대 명예훼손소송 1심 판결문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김용순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각 출력물, 임동욱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각 출력물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송두율부부를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DSF.BAK), "송두율을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POO.BAK), "김판기 동무에게"(RHKSRLDP.BAK)(이상 증 제1호의 출력문서 일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1991. 5. 18.자, 1991. 5. 20.자, 1991. 5. 21.자 1991. 5. 25.자 1994. 7. 9.자, 1995. 2. 26.자, 1996. 9. 25.자 각 노동신문(증 제3 내지 6호, 증 제10 내지 12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1. 3.5인치 디스켓 2개(증 제1호), 1991. 5. 2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호), 1994. 7. 1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판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에 종사한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판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판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연락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1973. 9.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이후, 1991. 5. 일자 미상경 간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고, 수년간 공작금을 지급받았으며,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체제 찬양 및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저술활동을 전개하거나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인 조선노동당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라는 점을 공소사실 제1항의 요지로 하여 이를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하는 한편,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03. 11. 19.로부터 15년(위 죄의 공소시효 기간임) 전인 1988. 11. 19. 이전의 사실은 경과사실로 기재한 것이라고 석명하였는바,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기소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실 중 1988. 11. 19.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 부분 유죄 사실의 경과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따로 유,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이 위헌, 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먼저,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 회의에 의하여 1980. 12. 31. 전문 개정되었으므로 당연무효의 법률이고, 최근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포용정책으로 선회한 결과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북한도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는 법률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법률이고,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학문, 예술의 자유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 및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헌법상의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었고, 한편 구 헌법을 개정하여 1987. 10. 29. 공포되고 1988. 2. 25.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현행 헌법시행 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현행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구 법률은 현행 헌법과 합치될 수 없어 폐지 실효되었다고 보여지는 법률에 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한 비록 헌법 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제정근거나 제정절차가 변경되었

다 하더라도 그 법률은 일정 지속효를 갖는 것이고, 나아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는 그 실질적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반되는 여부로 가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이 현행 헌법과는 달리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법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 등 참조),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남·북한의 정상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이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 1730 판결,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도43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점에 대하여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위헌법률로 무효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① 위 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② 위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사법기관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를 임의로 확대 또는 축소 적용할 소지를 남겨둔 결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소여부를 자의적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 법규에 따라 형이 집행되는 자를 그렇

지 않은 자에 비하여 차별함으로써 그에게 보장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③ 위 법조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평화통일정책을 채택한 헌법에 위반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의 취지 및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단계 평화통일정책에 비추어 위 법규위반자에게 가혹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은 어떠한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기 전의 단순한 예비, 음모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의 단순한 구성원인 일반 주민들까지 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무겁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저촉되니,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전문 및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상의 이유로 위 법조항은 위헌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1994. 7. 29. 93헌가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부'라 함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이고 책임자적인 자리에 있는 자를 일컫는 것이고,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 내에 있어서의 지위 여하, 자기의 지시를 따를 하부조직의 유무를 막론하고 반국가단체의 이념 및 정책에 따라 해당 조직원을 지도하거나 반국가단체의 존립 및 목적달성을 긴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 참조), 위 각 개념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반국가단체의 조직 형태 및 대상자의 조직 내에서의 위치, 중요도, 해당 업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그 적용단계에서 위 각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조직 형태, 직위, 명칭 등의 다양성, 가변성에 비추어 대상 법률조항에 사용된 각 용어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법당국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动机,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를 들어 위 법규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원칙 위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서 위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신중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법규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치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국가단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위험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법절차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조항이 헌법이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화통일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법조항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점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91. 5. 일자 미상경 북한 조선노동당의 간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간부로 선임되었다는 시기가 불명확하고 선임 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가 없는 것이니,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

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북한의 노동당에 가입한 후 간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어 대남 통일전선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점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을 북한 노동당의 간부로 선임한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해외 교포인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의 간부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대남 통일전선사업인 관계로 북한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의 간부로 선임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입북하여 김일성을 면담한 시기를 1991. 5. 24.로 특정하고 '…… 면담한 후 그 무렵 김일성의 지명에 의해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라고 개괄적으로 범죄일시를 표시하였는바, 그 정도의 공소사실 기재로써 그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어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범죄일시를 기재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이 부분 사건의 특성상 범죄일시의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다 할 것이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간부로 선임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범행의 경위 사실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방법은 아니라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검사가 피고인이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황장엽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임동옥, 김용순으로부터의 각 전문진술 부분, 김경필이 작성한 각 대북보고문[3.5인치 디스켓 2개(증 제1호)의 출력문서]의 각 기재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를 유추 적용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수사기관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가운데 작성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인정된 접견교통권은 구속 피의자의 권리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 혹은 접견교통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피의자신문서의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참여권의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서의 변호인의 입회뿐 아니라 개개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 등 개입까지 허용됨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형